

청탁금지법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16.9.22.자 매뉴얼 수정사항 - 학교용 매뉴얼 파일 반영 자료)

1. 법률 적용대상 구체화

○ 대상 기관

-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 (제외) 평생교육법 상 학교형태 등 평생교육 시설, 경제자유구역법·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 (적용) 교원-초중등 기간제교사, 직원-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학-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 아닌 자, 초중등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공무수행사인) 교육부·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유형(4개)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수정 전>

<수정 후>

< 법 제2조제1호나목 적용대상자 관리 시식 >

< 법 제2조제1호나목 적용대상자 관리 시식 >

구분	근거	유 형	대상인원	비고
적용	교원	법제2조 제2호라목	■유치원 등(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감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①
		■초·중·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신학검임교사, 명예교사, 감사		
	직원	법제2조 제2호라목	■대학교 등(고등교육법)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검임교원, 명예교수, 시간 감사, 초빙교원 등	②
		■유치원 등(유아교육법) -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촉탁의사 등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 위원	⑤	
	법제11조 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⑥	
	법제11조 제1항제3호	■민간부문에서 파견나온 자	⑦	
	법제11조 제1항제4호	■공무상심의·평가를 하는 자	⑧	

구분	근거	유 형	대상인원	비고
적용	교원	법제2조 제2호라목	■유치원 등(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기간제 교원	
		■초·중·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기간제 교원		
	직원	법제2조 제2호라목	■대학교 등(고등교육법)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유치원 등(유아교육법) -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촉탁의사 등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 위원		
	법제11조 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법제11조 제1항제3호	■민간부문에서 파견나온 자		
	법제11조 제1항제4호	■공무상심의·평가를 하는 자		

1-9

1-9

구분	근거	유 형	대상인원	비고
비적용		■위탁계약 등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위임·위탁 ■지원봉사자(무보수 또는 실비 보전) ■학생, 조교 등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등을 받고 근무하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		⑨
		■기타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중 교직원, 임직원이 아닌 사람		⑩

<<작성요령>>

- 작성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국립대학 법인 등 포함)
- 세부 작성방법(대상인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현원' 기준으로 작성)

(총괄)

- 국공립, 사립, 법인 여부 불문
- 공무원(국공립), 학교장, 이사장 등 임용 또는 채용의 권한이 있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직원, 법인 임직원은 모두 포함하여 작성
- 계약형태(정규, 기간제, 계약직, 시간감사 등)와 무관
- 지원봉사자(명예교사·사서, 학교보안관 등)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무보수(실비 보전)로 봉사하는 자는 교육기관에서 제외

(교원)

- ① 모든 교원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전임(정년, 비정년)교수, 비전임교수를 포함하며, (시간)감사, 조교는 직원 항목에 작성

(직원)

- ③ 공무원(국공립), 정년·학칙·규칙 등에 의한 정규 직원, 계약직(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등, 무기계약직 포함),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단기간 근로자(급식보조 등), 조교 등 계약형태와 무관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 등을 지원 받는 근로장학생, 학생조교 등은 제외
- ④ 임원, 정년·학칙·규칙 등에 의한 사무직원, 계약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공무수행사인)

-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 규칙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10

구분	근거	유 형	대상인원	비고
비적용		■위탁계약 등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위임·위탁 ■지원봉사자(무보수 또는 실비 보전) ■학생, 조교 등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등을 받고 근무하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		
		■기타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중 교직원, 임직원이 아닌 사람		

<<작성요령>>

- 작성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국립대학 법인 등 포함)
- 세부 작성방법(대상인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현원' 기준으로 작성)

(총괄)

- 국공립, 사립, 법인 여부 불문
- 공무원(국공립), 학교장, 이사장 등 임용 또는 채용의 권한이 있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법인 임직원은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지원봉사자(명예교사·사서, 학교보안관 등)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무보수(실비 보전)로 봉사하는 자는 교육기관에서 제외

(교원)

- ① 모든 교원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조교는 직원 항목에 작성

(직원)

- ③ 공무원(국공립), 정년·학칙·규칙 등에 의한 정규 직원, 계약직 직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등, 무기계약직 포함), 단기간 근로자(급식보조 등), 조교 등 계약형태와 무관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 등을 지원 받는 근로장학생, 학생조교 등은 제외
- ④ 임원, 정년·학칙·규칙 등에 의한 사무직원, 계약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공무수행사인)

-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 규칙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회계를 대상인원에 작성하고 전체 위원회 수를 비교해 기재

10

2.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수정(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 당초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여 전액을 반환해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과 가액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사비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 매뉴얼 공개 후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논의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 도출
-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페이지 122 >

<수정 전>	<수정 후>
■ 경조사비의 반환 ○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이 아니라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을 반환 ※ 제2호의 예외사유는 가액기준(10만원 이하)과 목적 요건(부조)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면 목적 요건도 부정되어 가액기준 내의 부분만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경조사비의 반환 ○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공직자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에 대하여 제재대상 ※ 가액기준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 ○ 제공자는 언제나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

-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을 구체화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

-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페이지 84 >

<수정 전>	<수정 후>
3. 제3호(세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인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중여 외에도 사용자, 무이자 소비자대출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사용자, 무이자 소비자대출 등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제시된 ‘사적 거래로 인한 세무의 이행’과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되지 않음 4.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 친족의 범위 > 	3. 제3호(세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인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중여 외에도 사용자, 무이자 소비자대출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사용자, 무이자 소비자대출 등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제시된 ‘사적 거래로 인한 세무의 이행’과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되지 않음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 ○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4.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기 위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

- **(정의)**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페이지 85~86 >

<수정 전>	<수정 후>
5.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라도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절빙·제단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인륜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인·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교직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절빙·제단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절빙·제단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6.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공식적인 행사)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관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 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85	5.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라도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절빙·제단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인륜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인·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교직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절빙·제단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절빙·제단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 ○ (정의)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